은 행용



은행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객번	호 :							2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겸 담보제공자)							담보제	공자						
주식회사 신	한은행 앞	(U U/110/1)	주소								주소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행 (이하 "은행"	이라 합	니다)과 아래의	의 조건에 따라	라 대출거래를 '	함에 있여	어 "은행 ⁽	스 스거래?	기본약	관(가계-	용)"이 조	1 용 됨을 승	등인하고,	다음 각 조힝	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거래조 ① 대출과목, 대출 시 합니다.)	조건 슬(한도)금액, 이자 및	및 지연배상금 <u></u>	의 율, 거]래방식 등 거	래조건은 다	음과 같습니다	. (거래병	}식이 수	- 개로 되	어 있는	는 경우 🕆	은행직원]의 설명을	을 듣고 ㅎ	배당되는 "□	" 내에 " V " 표
대출과목								거래 구	분		개별거리	!	유동	성 한도	거래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 (₩	!)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		20	년	월	일		대출기	기간 끝니	는 날			20	년		월 일	
	고정금리 (은행여	시신거래기본약관(가계	l용) 제3조 <i>7</i>	테2항 제1호 선택)	대출기	간 끝나는 날까	지 연 ()%	*()
대출이자율 등	변동금리 (은행여	신거래기본약관(가계	I용) 제3조 <i>7</i>	데2항 제2호 선택)		 부변동여신: (변동여신: 수신금리+()%	단일금리부변동(+ (임금리()%	※ 단,		주기 (배율은 제10조(에 따라 적용됩	
	기타 ()	※ 우	김 금리는	제103	돈의 금리	우대율			가 적 용 된 금	
이자및지연배상금 계 산 방 법	1, 1년을 365일(윤 2, 지연배상금률은 이자율에 2%를	- M1조의 대출	이자율			최고 연 ()%	5 이내로	! 적용합니	l다. E	반, 대출0	지율이	최고 지연	크배상 금	률 이상인 경약	우에는 대출
	3. 연체가산금리는	= ()%	6를 적용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 기타 : (∃ × ()% ×	(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	년을 초과	하는 경우	대출기간은	3년으로	일 산정하며	대출잔여	일수는 3년0	세서 대출경	과일수를 차감한	일수로 산정함.)
대 출 실 행 방 법	대출기간 시작. 대출기간 시작.			합니다.)년 ()(개)월 (H로 실행협 금액을 획		분할 실행합니	l다.
상 환 방 법	□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마다 (□ 원금과 이자)을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대출금 중 금 및 임은 대출기가 끝나는 날에 상화하며 나머지 대축금액은 ()년 ()개월 기본하기에 토															
이 자 지 급 시 기 및 방 법	최초이자는 대한 기계 최초 기차 기계	l금 상환일 또	는 월적	립금 납입일어	지급합니다		끝나는	날에 지	급합니다.				배월 이내어 니다.	에 지급합	-1-1.	을 유의 기 바랍니다.
계 좌 번 호	대출금 입금 계좌	번호 :						자동이치	체 계좌번호	호:					·	
대 출 기 간 자 동 연 기	대출기간이 끝날 때 단위로 상환기일의															
대출이지납입일, 금리	변동내역, 중도상환해의	금 면제기일 안	내서비스	원함 원	일하지 않음	시지롱 일비모] e-mail	스바시지콩	. 🔲 7	'IEK)		
사전고지예정일						5일전 10								,	본인은 귀항	의 대출 모바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안내서비스 □ 원함 □ 원하지 않음 □ 모바일 통지서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 7년() 의 2/e-mail 통지서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 1/년() 의 2/년(
'원함'을 선택하신 등록된 휴대폰번호 고객님의 부주의 이지납입일 모바	. 경우 대출이자 납입 호 또는 e-mail 주소 로 인한 잘못된 휴대 일 통지는 이자납입일 내는 금리변동 당일 !	가 신청하신 내 폰번호 또는 e- 날과 사전에 고객	용과 일차 -mail 주	:i하는지 반드/ 소로 대출관련	 제기일, 대출금 확인하시기 정보가 통지되	바랍니다. 되어 발생되는 문	문제에 대	하여 은형				다.				J어 전자통지 용약관에 동의
② 대출만기일(분	할상환금 상환일 포	함) 또는 이자	납입일	등이 은행휴드	 무일인 경우어	는 그 기일을 1	다음 영역	업일로 현	합니다.		담당	자	책임	자	결재권자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고정급리여신」이란 당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리 변경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일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금융채10년물의 유통수익률과 직전일의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자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신자취급학 때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경으로 실제에 보도주기와 저용되바出은 파리기로 하나다.
 - 중 고식이 최초 유급할 때 선택인 급디를 되어합니다. 각각의 사장기군급니의 현장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1) CD91일물 기준급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 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경합
 - 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 상계획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CD수익률을 대 체하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현재 한국금용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 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CD수익률 대체금리 의 산출근거인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 등급)을 채권전문평가사가 산출ㆍ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CD수익률 대체금리를 적용(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러가 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사유, 내용 및 기간 등을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사유, 내용 및 기간 등을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CD수익률과 관련된 여신거래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CD수익률을 대체하는 CD수익률 대체금리의 금리수준 선정근거, 적용시작일 등을 안내 적용시작일에 CD수익률 대체금리를 산출이 중단된 CD수익률 대신하여여신거래 계약에 적용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2)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금융채10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마다 변경합니다.
 (3)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날로 부터 매6개월(또는 3개월, 1년)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이자율은 6개월 (또는 3개월,1년)마다 변경합니다.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5년물, 금융채5년물 금융채10년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일 최종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미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적진일 최종 잔액기준 어당되다. 금리를 시급하는 하나면 명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신기준금리부 변동여신」이란 당행서 고시하는 (신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공되는 여신을 말하며, (신)기준금리란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업무원가 등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리로서 은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신)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4) 「단일금리부 변동여신」이란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과목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금・ 폭금・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물과적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⑤ 「수신금리부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금·적금·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 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합니다.
 ⑥ 제1조의 대출기간자동연기에 따라 기한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연기 시점에서 은행이 정한 SPREAD(가산금리)로 변경할 수 있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⑦ 채무자는 전 ⑥항에 의하여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 변경전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⑧ 전 ⑦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보니다
- 봅니다.

제 3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 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 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

- 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 로 합니다
- 로합니다
 ②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2. 「장여일수」는 중도상환 다음날부터 당초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할상환대출 급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경과일수」는 약정시작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금의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2.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 3.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제 5 조 가계유동성한도대출에 대한 약정

- 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 기로 합니다
 - 2.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 는 것으로 합니다.
 - 는 것으로 합니다.
 3.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이자(이하 "마구나이지"라 합니다) 등은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갚기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힙
 - 1... 4.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 리는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 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인배 3 대를 지답이기도 합니다.
 ②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1.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 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표가도 합니다. 2.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끝나 는 날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끝나는 날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 여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③ 대출(한도)금 사용제한

- (내물인보) 이렇게 한 기업에 발표되었다. 기물인보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 · 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단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사문란정보, 정보기보고 되었다. 다음 전체 전체 보고 있다. 다음 전체 전체 기업을 기업하다. 에는 대출(한도)금액에 불구하고 대출(한도)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자동이체 지급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오 은행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3. 제한 시청한 사유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행은 사용 제한을 해결하여 없애기로 합니다.

제 6 조 인지세의 부담

-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7 조 담보권 설정

- ✓ 삼모권 실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 · 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부수하는 이자 · 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 · 새로 씀 · 갱신 · 분할 · 병합 · 중액 · 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수인하면 나
- 기년 전세포 클러늄의 가능 로용시되고 하기 돼 ㅆ 되고 수 ㅠ ㅠ로 ㅠ ㅠ로 ㅠ ㅠ 마침을 승인합니다.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	ଥା								
	종 별		(211 -	1				구 분			우대	윤
	증세(기)번호			\dashv		□ 신용(또는 ¼					7-11	_
	또는 계좌번호					신한카드	(신용/처	크) 보유				
	명의인(또는 위탁자)							인 신한카드		¬>	연 ()9
	수익자									□체크) 보유하고,	12 ()7
	예금잔액					□ 배혈, /		· 3개월(□	·!용/제=	크) 이용실적		
	담보한도액				금	\ \		4 VIO				
	[Min(여신한도액×110%,				리	☐ 전자금융 관		#31 II#3		네 이테시저이 하이	GI /	\0.
	예금잔액×110%)]				우	인터넷행정, 되는 경우	, 모마달	30, 1 30	이 등 등	해 이체실적이 확인	연 ()9
	신규일자				대		- atalul	01-11				
	지급기일				항	□ 공과금 또는		이제				
제	8 조 담보 · 보험				목	이 아파트(성		매미이눼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	로 부동산을 매약	일 또	(I)	※ 본인 계좌 기			이정		연 ()9
	는 건축 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된 경우 익월 실적으		
	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					로 인정				- 0		
	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 '		플랜형 통점) 과려					
	9 조 대출채권의 양도·신탁 승		비하						/ 김대리	l / 캠퍼스 /	연 ()9
	①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그거		S20통장 등					_ `	,.
	당권의 전부 및 일부를 은행의 승기				금	기타 거래실	J적에 의	한 우대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서				대교아 프 등	V					연 ()9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꿃	\vee					연 ()9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형				항	V					연 ()9
	②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홋	V					연 ()9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됨에 '	ν-/	V					연 ()9
	동의하며,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2) 제1항:	의 금리우대 적성	용은 대출	실행일(기한	한연장 또는	는 조건변경일 포함)여	게 금리우	대제
	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0 0		경 등의 사유로 박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10 202 1 11	(3) 금리 (우대항목(I)에 으	1한 우대	기간은, 대	출실행일(フ	기한연장 또는 조건병	변경일 제외	리)로-
	③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보부동산의 소유	궈읔						이행 시 자동연장 목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									되지 않을 경우에는 -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		- , , , , , , ,							행하는 경우에는 금급		
	④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		출채권 등의 양도	일까						대출 SMS/Email통		
	지 후순위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거래조건 대출이자	율 등 항도	루에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은행이				정금리	기를 선택한 경우	· ④항 기	준에 의해 금	금리우대기	· 적용됩니다.)		
	를 서면으로 하여 이 약정에 따른					구	분			금리우대 적	용 기준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으며, o				대출 실	행(기한연장, 조건		외) 후 최초	3개월	실행시점 금리		
	이내에 이를 은행에 알리기로 합니					00,				전전월말	기준	
제	10 조 금리우대 적용							실행일이	, 2	최근 3개월 실적으로	이행여부	! 확인
	① 제1조의 약정이자율은 대출 실험	했시 아래 서탠 항목의 우대육이] 전용되며 이후	에는	3개	월 이후		10일인 경우	- (단, 최초 적용시는 최근 2가		부 확인
	해당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는 기준							실행일이		전월말 7		
	※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르밀				말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실적으로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1100-1-1	1 1 1—, 1 110	1 ^	1) 금리유	-대항목(Ⅱ)에 의	한 우대	는 다음 금리	재산정일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까지로	라
		н	Orllo	$\overline{}$	다음	금리 재산정일에	금리우디	· 조건 충족(여부를 재선	산정하여 금리를 우디	하기로 힙	납니다
		분	우대율	제 1	1 조 다	출실행중단						
	□ 예금 관련	~	- 11				대축식	해 저에 차격	-에게 대축	출증가, 연체 발생, 선]용 <u>듯</u> 급 대	F는 :
		연금신탁, 🗌 청약저축 _, 🗌 유동성								화되거나 차주가 제공		
	리 니겠다.		. 연 (출을 실행하지 않을 -		
	의 이상 O지 및 이상 O지 및 및 기계 및	엑, 🗌 평산, 🗌 궐물입액 ()			 타 특약사항	, 11	0 = 110	. 01 112	26 60 1 1 1 1 1 1	1 20 1	١.
	대 만원 이상 유지				2 쪼 /	1다 국극사왕						
	항 급여이체 관련		-101									
		l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만원 이상		١٥,								
	I wiyonop care i'i i)%								
	□ □ 항영 논인계와도 합급할 전용상품에 한함)	실적 1회 100만원 이상 확인(비대단	2									
	[건증6품에 원립/											
	변동금리대출 금리상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관련) <u> </u>								
`	•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완료할 [대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금리, 단일금	리부변동금리, 수신	본 인 겸					권리띠는			
	금리 및 거래실적에 따라 이자율	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재두	· F보제공자			인		전화번호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충분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병하 서며드고 이렇									\neg
	하였습니다.(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글 제공 겉ᆻ으며 대중에 대해 중단 제공방법(택1) : □ 직접교부(비대면	r이 결정본과 이이 대출인 경우 화면	담보제공자			인		전화번호			
L	확인), 🗌 모바일 통지서비스, 🗌 e	-mail 통지서비스)	0, 40									
Ē	어시기의 아저 고급되어 오른	INVINITIEUE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11 이전 11 사	ы	이/겨 다	=====================================				171	병 또는 (P	ો
	여신거래 약정 관련하여 은행		로 극경시 경				+					
L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실	일병을 듣고 이해하였음.			담보제	공자				서당	병 또는 (인)
*	본 약정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기	['] 서쳐 제공됩니	다.							
	고객불만, 애로사항 상담	• 인터넷: www.shinhan	.com → 고객산	센터 → 전자민	원	• 전화 : ()80-02	3-0182	•	팩스 : 0505-189	-0220	
	(소비자지원부)	 우편 : (04513) 서울특별 										
	_	본인 및 자서 확인	소속		위	,	성명			<u> </u>		







은행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객민	오 .			20 년	절 일		
		성명	서명 또는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담보제:	공자		_		
주식회사 신	(경 IBMRN) 한은행 앞	주소			주소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아래!	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현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전	적용됨을 승인하고, 대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에 1 조 거래조 ① 대출과목, 대출 시 합니다.)	도 건 들(한도)금액, 이자 및 지연배상금	·의 율, 거래방식 등 ア	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어 있는 경우 은행직육	원의 설명을 듣고 해	당되는 "□" 내에 " V " 표		
대 출 과 목				거래 구분	개별거래	유동성 한도가	H래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 (₩)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끝나는 날	20	년 월	일 일		
	고정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	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	지 연 ()%	*()		
대출이자율 등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	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시장금리부변동여신: ()% 단일금리부변동() + ()% #신:단일금리()%	※ 단, 금리 우대	F기 () 율은 제10조에서 정한 따라 적용됩니다.		
	기타 () ※ 위 금리는 3	제10조의 금리우대율	연()%7	· 적용된 금리입니다.		
이자및지연배상금 계 산 방 법	, , , , , , , , , , , , , , , , , , ,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 × (□ 기타 : ()% × (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	열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은 (3년으로 산정하며 대출잔이	1일수는 3년에서 대출경교	마일수를 차감한 일수로 산정함.)		
대 출 실 행 방 법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 = =		J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으 라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			할 실행합니다.		
상 환 방 법	대출금 중 금	라 ()년 (을 균등 분할상환합니 면 ()월 (해당일에 (권금 이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다. 원은 대출기간 끝니)일부터 매 ())] 원금과 이자)을 분할 상혼	나는 날에 상환하며, 나머. 개월마다 (□ 원금 □ 원 합니다. H ()개월마다 (□	월 ()일부터 지 대출금액은 (원금과 이자)을 균등 ¦ 원금 □ 원금과 이	매 ()개월대)년 ()기 분할상환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다.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이 자 지 급 시 기 및 방 법	최초이자는 대출기간 시작되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는 월적립금 납입일어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 니다.	이다.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 좌 번 호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번호	₹:				
대 출 기 간 자 동 연 기	대출기간이 끝날 때 은행이 정한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기 및 금리			- , -					
사전고지예정일 대출금리산정내역서 ' 휴대폰번호 • '원함' 을 선택하신 • 등록된 휴대폰번: • 고객님의 부주의 • 이자납입일 모바'	변동내역,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기일 인 안내서비스 ! 경우 대출이자 납입일, 금리변동나 호 또는 e-mail 주소가 신청하신 나 로 인한 잘못된 휴대폰번호 또는 e 일 통지는 이자납입일과 사전에 고 내는 금리변동 당일 발송됩니다.	□ 원함 □ 원 1역, 중도상환해약금 면 1용과 일치하는지 반드/ mail 주소로 대출관련	5일전 10' 5일전 1	제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1개월전 기타(기지 않습니다.)	본인은 귀행의 대출 모바일/e-mail 통지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전자통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② 대출만기일(분할상환금 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납입일 등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2 또 네줄이시를 다 단증 ① 「고정금리여신」이란 당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급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
- (지송금디무 변동의신)이란 지장기순금리 또는 고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정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리 변경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일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5년물, 금융채10년물의 유통수익률과 직전일의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할 때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경 이 시에 병급 중인 전 인생에 변경 공기를 받았다. 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는 기네니 근공구기의 역공 3 법을 찍는기로 합니다. (I) CD91일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임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 해 직전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 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경합
 - 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 상계획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CD수익률을 대 체하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현재 한국금용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 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CD수익률 대체금리 의 산출근거인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 등급)을 채권전문평가사가 산출ㆍ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CD수익률 대체금리를 적용(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사유, 내용 및 기간 등을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CD수익률과 관련된 여신거래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CD수익률을 대체 하는 CD수익률 대체금리의 금리수준, 선정근거, 적용시작일 등을 안내

- 하는 CD수익률 대체금리의 금리수순, 선성근거, 적용시작일 등을 안내 적용시작일에 CD수익률 대체금리를 산출이 중단된 CD수익률 대신하여 여신거래 계약에 적용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2)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금융채10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병 그용체소 조가의 다스평그그리를 이지으로 전용차기로 하나다 마라성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마다 변경합니다. (3)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날로 부터 매6개월(또는 3개월, 1년)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
-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또는 3개월,1년)마다 변경합니다.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5년물, 금융채10년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일 최종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1일부터 30년까지 기간별 금리에 자금비용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해당 고시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전용하기로 합니다.
- 금리를 의미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해당 고시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신기준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신)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 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신)기준금리란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리로서 은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신)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대출이가율이 변동하여 작용하기로 합니다.
 ④ 「단일금리부 변동여신」이란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과목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⑤ 「수신금리부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금·적금·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합니다.
 ⑥ 제1조의 대출기간자동연기에 따라 기한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연기 시점에서 은행이 정한 SPREAD(가산금리)로 변경할 수 있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⑦ 채무자는 전 ⑥항에 의하여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 변경전 이자율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⑧ 전 ⑦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보니다
- 봅니다.

제 3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 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 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

기로 합니다.

③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 로 합니다
- 2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요율을 곱히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
-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 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2. '잔여일수,는 중도상환 다음날부터 당초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할상환대 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경과일수,는 약정시작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금의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2.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으해이 필요에 이참여 약저기인 저에 예금 두과 사계하는 경우

- 3.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제 5 조 가계유동성한도대출에 대한 약정

- 3 조 기계뉴증경인포네돌에 대한 극장 ①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법 등 1.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유동성한도대출기본계좌 (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 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 기로 합니다
 - 2.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 는 것으로 합니다.
 - 는 것으로 합니다.
 3.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이자(이하 "마구나이지"라 합니다) 등은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갚기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힙
 - 1... 4.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 리는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 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 / / / 기정되어 기술 보기 수 있는 네물득목 1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어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고 있고 있다. 갚기로 합니다.
- 표가도 합니다. 2.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끝나 는 날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끝나는 날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 여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③ 대출(한도)금 사용제한

- 에는 대출(한도)금액에 불구하고 대출(한도)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에는 대출인보급 역에 출구하고 대출인보급 사용을 제인할 수 있습니다. 인, 논쟁이 정한 자동이체 지급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3. 제1호에 정한 사유가 하는데 없어져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기능한 경우에는 은
- 행은 사용 제한을 해결하여 없애기로 합니다.

제 6 조 인지세의 부담

- 0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7 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
- 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 ② 세1상의 실천의 표적는 현급 ' 구덕 먼이 세탁이루에 역납되는 미국을 소급한다가 그 기부수하는 이자 · 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 · 새로 씀 · 갱신 · 분할 · 병합 · 증액 · 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 기업 근데도 글러남기 생 한 3시작한 3시 개 보기지도 크게 해한 가 그런 기계 표시다 미집을 승인합니다.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의 표시		(단위 : 원									10
종 별								구 분			우대	율
증서(기)번호 또는 계좌번호						□ 신용(또는 :		├드 관련 ·/체크) 보유				
명의인(또는 위탁자)				-				/세그/ 포ㅠ 행인 신한카드	보유			
수익자										체크) 보유하고,	연 ()%
예금잔액				1			, 🗌 초	[근 3개월(□선				
담보한도액				7	금	()[만원 이상				
[Min(여신한도액×110%,					리	□ 전자금융 관						
예금잔액×110%)]					우		l, 모비	일뱅킹, 폰뱅킹	J 등을 통	해 이체실적이 확인	연 ()%
신규일자					대	되는 경우						
지급기일					 항	□ 공과금 또는		비 이체				
조 담보 · 보험		-			목	- 공과금		관리비 이체				
	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되 대출로 부	노동산을 매입	圧	(I)	※ 본인 계좌			이전		연 ()%
	기로 약정한 경우 매입 또는 건축									된 경우 익월 실적으		
]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					로 인정				_ 0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	방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플랜형 통점	당 관련	1				
	신탁 승낙 및 피담보채권의		+					기디 / 미래설기	예 / 김대리	l / 캠퍼스 /	연 ()9
	- 해외에서 채권 유동화를 위해 여			-저		S20통장 등	등 보유	-				
	- -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 :				금	기타 거래설	실적에	의한 우대				
	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채권 잉				링	\vee					연 ()9
	- 있기로 하되, 대출채권 및 근저				苮	V					연 ()9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 양수인여			_	항	V					연 (연 ()9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			근	급리우대항목(됨)	V \/					연()9)9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	을 양도하는 시점	덕에서 확정돈	에	\ - <i>i</i>	1 7 -1 4 21 -1	^ ^	n = 11-na1/_1:	O Almi wasi		-	, .
	브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투			7					한연상 또는	는 조건변경일 포함)여	게 금리우	대제.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		용할 수 없은	을		등의 사유로			호 11위(^)	기원서기 ㅠ1. ㅋ기니	1 과이 케스	^]\⊐:
	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기한연장 또는 조건변		
	관련하여 매매, 상속, 증여 등에									! 이행 시 자동연장 됨 되지 않을 경우에는 -		
	우 제3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이히	하며 이에 0	의						퍼시 끊글 경구에는 - 행하는 경우에는 금리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맹이는 경우에는 금드 대출 SMS/Email통》		
	ŀ련하여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된 ^다									기관 SIVIS/EIIIAII당/ 기래조건 대출이자		
	가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									기대조선 대출이자 } 적용됩니다.)	E 0 0=	- ۱۱۱
	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				804				94741/) =IT	
	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금리우대 적		
의안 내물을 해서알 구이내에 이를 은행에 알	있으며, 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	앙도의 사실을 입	[[일도무터][I L	내술 실형	방(기한연장, 조	선면성	3 세외) 후 죄3	도 3개월	실행시점 금리의		
	기도 합니다.							내출 실행일이		전전월말 최근 3개월 실적으로		호아
0 조 금리우대 적용	과존 기의 다시에 가려 되므?	0 0 -1 0 -1 -1 0	\- _ . - .	,	3개월	실 이후	1일	l~10일인 경우		되는 3개월 월국—로 (단, 최초 적용시는 최근 2개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 항목의					· · ·	[내출 실행일이		전월말 <i>7</i>		
	되는 기준에 따라 재산정되어 우							일~말일인 경우	2 :	최근 3개월 실적으로		보 확인
	들으시고 해당항목의 "□" 내여	ᅦ ∨ 표시하시	고, 우대양독	义) 근리오	대하모(Ⅱ)에 으]하 우	대느 다은 근근] 재사저인	!(기한연장, 조건변경	두)까지로	라하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			_						산정하여 금리를 우다		
	구 분		우대율	TJI 44		출실행중단	ш	1 11-6 0 1	11 6 11	601101611	1 1 1 1 1 2	- ' '
□ 예금 관련							호미츠	시체 계세 키기	조세계 메크	ᅕ쥐 서ᆌ HL체 Հ	10 ビユ r	TL.
	적금, 🗌 연금신탁, 🗌 청약저축,	□ 유동성예금		0)	- 앵근 네]시요퍼?	골세탁 세월 후 8 치라 드 키기	수 네폴 작이 자	"골맹 선에 서는 L요이처 사하나	드웨게 네달 드려이 아침	출 증가, 연체 발생, 신 화되거나 차주가 제공	하 저버	ᄞᇻ
리 기다()		연 ()							44/14 사무기 세명 출을 실행하지 않을 4		
우 위 상품을 보유하	·고, □ 잔액, □ 평잔, □ 월불입	l액 ()					6 41 2	0.25 리시트	707 41	크린 근장에게 ば근 ^	L YELL	٦.
대 반원 이상 유시				세 12	2 소 기	타 특약사항						
할 □급여이체 관련												
/ - \	르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0만원 이상 확인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5101/11-11-1	연 ()	6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확인(비대면										
전용상품에 현	암)											
변동금리대축 금리싱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그리 사정내연시	선 과려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금			보이겨								
	나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다	l출이자율이 인상!	을 다니, 기년 될 경우 재무	본 인 겸 담보제공자			인		전화번호			
금리 및 거래실적에 따	음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	니다. 			-		+					\dashv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u>!</u> 정내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내용()	에 대해 중문히 실 교보(비대명 대초(설명듣고 이해 이 겨오 하며	담보제공자			<u>인</u>		전화번호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저내여서 제고바버/태() · 🗆 지저	파구(미네근 네놀)	그 연구 최근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 하였습니다.(대출금리 신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직접.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하였습니다.(대출금리 산확인), □ 모바일 통지사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직접.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1-11O) FL OF	T111 11	но	1/74	TII 77 TI)				LID		a)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 하였습니다.(대출금리 신확인), □ 모바일 통지서 여신거래 약정 관련 하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정서 상	본인	<u>l</u> (겸 담보	제공자)				서문	병 또는 (ପ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하였습니다.(대출금리 신 확인), □ 모바일 통지서 여신거래 약정 관련하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직접.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정서 상		(경 담보 담보제공						령 또는 (령 또는 (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 하였습니다.(대출금리 산확인), □ 모바일 통지사 여신거래 약정 관련하	정내역서 제공방법(택() : □ 직접.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ŀ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였음.			담보제공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정내역서 제공방법(택) : □ 직접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F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	였음. 통제기준에 따른	를 절차를 거	쳐 제공됩니다	담보제공 나.	강자	080-	N23_N192		서명	병 또는 (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하였습니다.(대출금리 상확인, □ 모바일 통지서 하신거래 약정 관련 증주요 내용에 대하여 약정서는 금융소비지 고객불만, 애로사항 상태	정내역서 제공방법(택) : □ 직접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F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	였음. 통제기준에 따른 shinhan.com	를 절차를 거) → 고객센	쳐 제공됩니다 러 → 전자민유	담보제공 나. 원	· 전화 : (080-	023-0182	•		병 또는 (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하였습니다.(대출금리 전후인), □ 모바일 통지서 역신거래 약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본 약정서는 금융소비지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직접.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 • 인터넷 : www • 우편 : (04513)	였음. 통제기준에 따른 shinhan.com	를 절차를 거 1 → 고객센 등구 세종대를	쳐 제공됩니다 러 → 전자민유	담보제공 나. 원 링로2가,	· 전화 : (023-0182	•	서명	병 또는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www.shinhan.com
 - 전화접수 : 1544-8000
 - 서면접수 : 당행 전 영업점
-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당행] 고객 정보관리 · 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1544-8000
 - 은행연합회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상담실 1544-1040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국번없이) 1332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shinhan.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하는 고객은 [당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레딧: 02) 1588-2486 / www.mycredit.co.kr
 - 크레딧뱅크: 02) 3771-1004 /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 846-5000 / www.siren24.com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 708-1000 / www.kcb4u.com

4.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신한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한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제3고 시기6러 지근레이라 ① 이자 · 할인료 · 보증료 ·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 계산방법 · 지 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 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할 때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3.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 · 인하는 건전한 금융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경우에는 기관이 그 기관이 되었다.

-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은행은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시용상태의 현저하 병두이 인라고 이저되는 경은 하리지

- 는 는 기를 다르고 내기고 되기도 등로 파고를 쓰게 되기는 중 이 는 중단 그 경 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 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 기 차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은행의 재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 2. 담모녹색달러 소사 또는 구급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 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 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 이자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 가기 보기 기 기인 및 1992의 담귀 네에서 약성급다도, 1년을 30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제*자자는 '금융소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 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위 4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

제국소국이 지급/계국국 에시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4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 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 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 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
 - 들 '장글이어' [/시급도증기대에 났어지의 사전도 장제구제구작가 돈을 대한 묘어로 사람 (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 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 는 때, 다만, 답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 생실합니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회생·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2.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해당채무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제3조 제5항에 의한 경우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하여 지체한 때
- 이어 지세인 때 ③ <u>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u>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결하여 없앰,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신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u>상실하여, 곧 이를</u> 갚
 - 선언이 시되는 에게 되는 다음에 내면 그는 내가 되고 있는 그 등을 하는 이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

- 는 항에 대한 무 개의 제무 중 아무너도 기단에 단체하지 아니하기 제2항 모든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제2로 제10 조세계 요집 사건한 사건이 있었다.
- 4.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 4. 세5소, 세19소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곡거래 유시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 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 · 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4. <u>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해당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5. 제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토리하여야 합니다. 타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값이야 할 의무를 집니다.</u>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 위 7소의 발출 전 무단은 *중정거대위현의의 표단약판과 중이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 · 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 제3호 ·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

신한은행은 친환경용지를 사용합니다.



리는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7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 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은행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 8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9조 채무조정요청

제3도 제구도입요점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제무자는 약정한 산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제11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의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 보증인 · 답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 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은행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을 가입할 때 은행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13조 어음의 제시 · 교부

- 제 13소 어음의 세시 · 교무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가지 되었다.
- 이어, 어디어 그는 교무를 하게 많아고 되기, 이 3가 다 처음이 처리고 제13의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
- 정되는 때 ③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 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4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일부변제 · 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
- 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 는 모든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에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중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부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2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

- 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번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모든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도장을 찍은 모양·서명을, 채무자가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16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10도 근로가용되는 자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인감 ·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니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 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신고사항의 변경)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회부와 조사

제19조 회보와 조사

- 제 19소 외보와 소시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 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
- 여야 합니다.

제20조 이행장소 · 준거법

- 지문으로 작당하고 · **군기급**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관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1조 약관 · 부속약관 변경

- 제21소 약관·무속약관 면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등의 시행일 직전 1개월간 그 내용을 회수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2. 약관등의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2. 병관등의 개정이 제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 2. 약관등의 개정이 재무사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은행은 약관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된 약관등의 시행
 일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에
 게 그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전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채
 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느 그러하지 아니하니다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는 그러하시 아니압니나.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합니다.

제22조 관할법원의 합의

제22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제 의 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변경된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치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2조 기E	다 특약사항 별지			
	I			
본인		⑩ 또는 서명		